

○ 관련 규정

개정 전	개정 후
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 학생은 취득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며, 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과목 개설을 주관하는 학과(부)장이 동일한 교과목임을 인정할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경우로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+ 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,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. 부칙 〈제00126호, 2015. 8. 28.〉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① 생략 ② 재수강에 따른 성적 제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관련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	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 학생은 취득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.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한다. ③ 종전에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성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.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※ 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 일부개정세칙안은 제11차(임시) 평의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, 2026. 2. 공포 예정